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 10. 28.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07회 임시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2016년 10월 28일)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장재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안 제2조)
 -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사항 신설
 -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
- 위원의 위촉 임기를 한차례만 연임으로 개정 (안 제3조)

-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 및 신설 (안 제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로 변경
 -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신설
 -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신설
-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규정 삭제(안 제5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및 신설(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원공사를 신설(안 제12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 조정(안 제5조 ~ 제15조)

3. 검토보고 (김은모 전문위원)

- 동(同) 조례안은 2016.9.13.~10.3.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동 조례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2016.1.15.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106조의2 등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고, 2014.5.28. 「지방재정법」 제91조가 개정됨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종전 ‘경리관’)이 당연 직으로 규정되어 있던 위원장을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권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인 관련 협회 등의 참여를 배제하였고, 위원의 구체화된 위촉 해제 사유를 명확하게 조례에 반영하였음
- 또한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건설진흥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검토결과 적법 타당하게 개정되었으며, 이번 조례개정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당해=>

해당으로, 자=> 사람으로, 부의하다=> 회의에 부치다 등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